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안)**

## 차 례

<b>I. 총 칙</b>	<b>1</b>
1.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시행	1
2.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방향	4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7
4.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7
<b>II.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b>	<b>8</b>
1. 전형별 운영기준	8
가. 일반전형	8
나. 특별전형	8
다. 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세부사항	10
2. 전형요소	18
가. 학교생활기록부	18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19
다. 기타 비교과형 요소 등	20
3. 전형방법	21
가.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방법 활성화	21
나. 전형방법의 연구 개발	22
다. 전형방법 간소화	22
라.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반영 지양 권고	23
마. 학생부 종합전형	23
4. 모집 지원 합격 및 등록	24
가. 학생모집	24

나. 전문대학 지원방법	25
다. 합격자 발표	25
라. 신입생 등록	26
마.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27
5.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 등	28
가. 전형체제 표준	28
나. 입학정보 표준화 및 용어정비 등	29
<b>III.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b>	<b>30</b>
가. 공통사항	30
나.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30
<b>IV. 행정사항</b>	<b>33</b>
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33
나. 지원 등록 현황 제출	33
다.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33
라.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	35
마. 입학전형료	35
바. 사전 예고제 강화	36
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36
아. 기타	37
<b>【붙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2017.08월 현재 기준)</b>	<b>38</b>
<b>【붙임 2】 2020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전형 일정</b>	<b>39</b>
<b>【붙임 3】 정원 외 특별전형 참고자료</b>	<b>40</b>

# I. 총 칙

## 1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시행

### 가. 수립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나. 기본사항의 수립·공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 ■■■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

-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 정관 및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삼의 기구  
(협의회 정관 제23조의2)

### 다. 기본사항의 적용

- 전문대학(이하 ‘대학’)은 위원회가 수립·공표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에 제출함.
  - ☞ **기본사항의 준수 의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에 의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계획에는 모집시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위원회는 대학별 시행계획에 대해 협의 · 조정을 실시함.
- ※ 시행계획 제출 시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중장기 전망과 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한 내부계획)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각 전형별로 명확히 보고하되, 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미 지정” 형태로 보고할 수 있음
- 대학은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 시에도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대해서도 협의 · 조정을 실시함.
  - 시행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 및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적극 반영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 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입학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이 기본사항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한함.

## **라. 기본사항 미 준수에 따른 제재**

-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전문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협의회 정관 제23조의 3), 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전문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마.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 대학은 위원회가 정한 기본사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 공표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거, 관계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고등 교육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함.

- 시행계획은 법령에 따라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학생 모집) 시작 일 이전까지 사유 발생 시 승인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 단, 정부 및 협의회의 조치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하여 변경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입학년도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함.  
※ 모집요강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6월말까지 완료 및 공개
- 시행계획 변경 ·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등은 협의회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안내

## 바. 전문대학 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정보 및 협의회 제출자료 외에도 수험생 진학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용한 정보(전년도 입시결과 등)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 가.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완화

-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함.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나. 입학전형 간소화 추진

-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입학전형을 핵심요소 위주로 간소하게 하며, [전형방법\(전형유형 수, 성적반영방법 등\)](#)을 유형화

### 다. 수시모집 비중 확대 및 모집시기별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 직업 전망과 학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수시 모집 비중 확대 필요
- 학교생활부 및 면접, 서류, 실기 중심의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보다는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 기회 확대
  - 수능 및 학생부 교과성적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정시모집으로 운영 권장

## **라.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확대**

-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
- 농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그 외 사회·지역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전형'을 적극 권장
- 입학단계부터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를 고려한 입학전형 확대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입학 단계에서부터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산업체 수요 맞춤형 입학전형 활성화
- 산업체 협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자리 걱정 없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교육'을 적극 모색

## **마. 재직자의 향상교육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입학전형 활성화**

- 일·학습 병행을 통한 향상교육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에 전문대학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 및 재직자 등 계속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입학전형 활성화
-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어려움 없이 직업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진학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활성화

## **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인 대상의 입학전형 확대**

-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은퇴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 등 제2의 경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확대 운영
  - 만학도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내/외 특별전형을 비롯하여 비학위 과정(특별과정, 시간제 등록생 등)을 활성화하여 평생직업교육시대를 전문 대학이 선도

## 사. 합리적인 전형방법 및 기준 마련

-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전형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

## 4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 대학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 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 함
  -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대학 자체 점검 및 외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 함.

## II.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 1 전형별 운영기준

#### 가. 일반전형

##### 전형원칙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 · 타당성 · 신뢰성 · 공정성 ·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 · 지원 자격 · 평가기준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 (종교, 성별, 재산, 장애여부, 연령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 할 수 없음.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함.
  -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학칙과 동일하게 설정

#### 나. 특별전형

##### 전형원칙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전문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전문대학 교육의 본질을 해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원칙 적용
-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전문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 직업교육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입시제도 확대 노력

## □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대학 자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자체적인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 대졸자,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각종 지체 또는 장애인,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구분】

구분	전형명		
정원 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기준	고교 유형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반과정 졸업자 (일반고졸업자 등)</li><li>전문(직업)과정 졸업자 (특성화고졸업자 등)</li><li>연계교육 대상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등)</li></ul>
		경력자 및 특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련 경력자 (재직자 및 후진학 근로자 등)</li><li>특기자 (기술·기능대회 입상자, 어학, 예체능 등)</li></ul>
		추천자 및 사회·지역배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추천자 (학교장, 자치단체장 등)</li><li>사회·지역배려 대상자 (고른기회 대상자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산업체 위탁교육(1호)</li><li>장애인 등 대상자(4호)</li><li>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2호, 6호, 7호)</li><li>전문대학·대학 졸업자(8호)</li><li>만학도 및 성인재직자(12호)</li></ul>	
		기회균형 선발 (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농어촌 출신자(가목)</li><li>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라목), 한부모가족</li><li>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다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출신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li></ul>

\* 정원 외 특별전형 중 (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 호(목) 임.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외 특별전형 :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름

## 다. 특별전형 종류에 따른 세부사항

### □ 정원 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 특별전형

#### <전형기준 설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해 선발
- 지원자격 및 대상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업교육의 진흥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고교유형별 대상자 특별전형>

- (일반과정 / 전문과정 졸업자 특별전형) 일반과정 출신자 및 전문(직업)과정 출신자 간 입학사정(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고교 유형을 분리하여 자격기준 부여 가능
- (연계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 대상자, 특성화고-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대상자 등 관련 협약 등에 따라 우선 선발 가능하며, “연계교육 특별전형”으로 분리 운영 권장

#### <경력자 및 특기자 특별전형>

- (경력자 특별전형) 재직자, 취업자(학습근로자 등 포함), 산업체 근무 및 사회단체 활동 경력, 전공 관련 기능보유자, 창업자, 기타 산업체 현장과의 연계경력 등 각종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 (특기자) 특별한 기술과 기능, 각종 실적, 어학능력 및 예·체능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지원자격 또는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대회 참여 경력이나 자격·성적·입(수)상실적을 요구/활용하는 전형을 의미하며,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함.

분야	전형 방법
<b>체육 특기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 출석 반영 의무화</li> <li>■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및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li> </ul>
<b>특별 전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평가 시 정량적 평가기준 사전 마련 및 모집요강에 상세 공개</li> <li>■ 실기(면접)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3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학과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li> </ul>

### <사회 · 지역배려대상자 특별전형>

- (사회 · 지역배려자) 사회 · 지역배려자 등이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사회 · 지역배려 대상자 전형”(고른 기회 전형) 활성화 권장
  - ※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정원외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사회 · 지역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전형”을 지속 확대 권장.
  - “사회 · 지역배려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거나, 기존 대학 자체기준 특별전형 내 ‘고른기회’에 부합하는 자격기준을 추가 · 신설하여 운영
  -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정원내전형(고른기회전형 등)에 포함하여 선발 가능함.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 “사회 · 지역배려 대상자 전형”에는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학생의 진학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난 및 특별재해 지역 등의 피해학교 출신자 배려 권장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로 자격여부 확인 가능
- (지역인재 선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 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전형”은 “사회 · 지역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통합운영하고, 지역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해당 대학 소재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선발방법 등은 대학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
  - ※ 운영학과 및 인원(선발비율) 등에 대해서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
  -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 전문대학에서 활성화

- 지원자격 설정 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 특정 지역 고교,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고교 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
- \*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해당 지역의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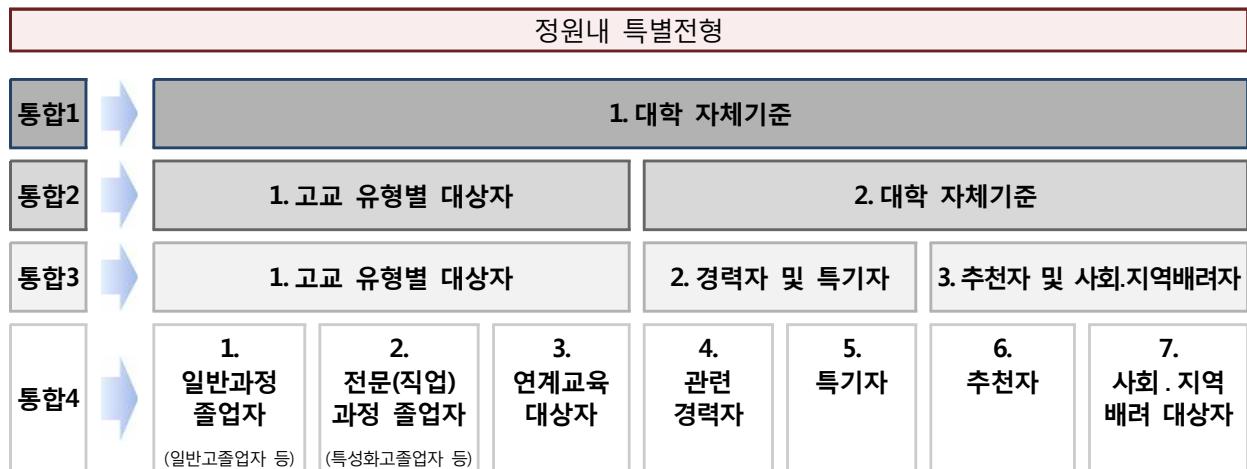
해당지역(권역)	범위
충청권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호남권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경북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울산·경남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 <정원내 특별전형 통합 및 간소화>

- 전문대학의 활성화 되지 않은 전형은 축소·폐지 또는 통합
  - 종전까지 각 대학이 자율로 다양하게 운영하던 전형을 최대 7개 통합기준 (“정원내 특별전형 통합기준(안)” 참조)으로 간소화 할 것을 권장

#### 【정원내 특별전형 통합기준(안)】



※ 각 대학의 전형별 모집인원 설정방법에 맞추어 통합1~통합4 중, 대학이 선택 적용(교차 선택 가능) 하되, 최대 7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적용例 : ① 종전 (특별전형, 독자기준) → 변경 (대학 자체기준)

② 종전 (전문계고, 자격증, 취업자, 추천자, 독자기준) → 변경 (전문과정 졸업자, 대학 자체기준)

※ 각 명칭은 수험생·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적의명칭으로 수정될 수 있음

## 【참고 : 전형 통합에 따른 세부기준(안)】

통합기준	세부기준(범위)
1. 일반과정 졸업자	일반고 졸업자 등
2.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
3. 연계교육 대상자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 대상자, 고교–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대상자, 기타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대상자 등
4. 관련경력자	재직자 및 취업자(학습근로자 등 포함), 산업체 근무, 방송활동경력, 사회 단체 활동경력, 전공 관련 기능보유자, 전공 관련 업체종사자, 벤처창업자 등
5. 특기자	기술·기능대회입상자, 자격증소지자, 어학능력우수자, 예·체능특기자 등
6. 추천자	교장·교사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산업체장 추천자 등
7.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b>한부모가족</b> , 장애인, 벽오지 / 도서벽지자녀, 각종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대안학교출신자, 다자녀, 다문화자녀, 실직자자녀, 만학도 및 주부, 국가재난 및 특별재해지역 출신자, 지역인재 전형, <b>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b> 등

### <기타 충원방법 등>

- 모집단위별 특별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하며, 모집단위별 일반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부족인원은 특별전형으로 모집인원을 이월하여 특별전형 지원자로 충원 가능

#### □ 정원 외 특별전형 (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원 외 총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운영원칙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 지표에 반영 권장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 요강 등에 명시 함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형>

영 제29조 제2항

제8호

- 자격기준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단, 간호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이내,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모집 가능)

### 【학력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회균형선발제>

영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다목·라목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아래의 범위 내 모집가능 (총 입학정원의 최대 11%)
  - (가목 : 농어촌출신자)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출신자 (모집단위별 10%이내, 총 입학정원의 4%이내)  
※ 농어촌 출신자의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
  - (다목 :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농어촌 출신자(가목)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라목) 포함 총 입학정원의 최대 11% 이내, 보건·의료 및 교원양성 관련 학과 모집금지)
  - (라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모집단위별 20%이내, 농어촌 출신자(가목)를 포함하여 총 입학정원의 5.5% 이내),

### 【기회균형선발제 전형 모집인원 (총 입학정원 기준)】

농어촌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4% 이내	-	-
5.5% 이내		
	11% 이내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한 특별교육 대상자 전형>

영 제29조 제2항  
제4호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
- 모집인원 : 제한 없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영 제2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아래의 같이 모집 가능
  - (2호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총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6호, 7호제외
  - (6호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 (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
    - \* 재외국민 : 모집인원 제한 없음.
    - \* 외국인 : 모집인원 제한 없음.
    -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 :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의 모집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 (9월 입학 가능)

#### □ 글로벌 환경에 대비한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직업교육 개발 · 확산을 통해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입학전형 모색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영 제29조 제2항 제12호

- 자격기준 :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모집인원 : 총 입학정원의 5%이내 (단, 간호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 보건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재직자·중도퇴직자 등이 재취업·창업을 위한 최신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성인중심의 입학전형 활성화 권장

- 성인학습자(만학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학전형 개발 등

※ 산업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평생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마련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자격기준 :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5% 이내,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제주특별법 제211조 및 218조

- 자격기준 : 제주특별법 제211조 및 제2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련 조례 제20조 4항 및 5항 (학생정원 등)에 따른 다음 ①~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부, 모, 본인 모두)
    - 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구성원
    -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10% 이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

**<산업체위탁교육>**

영 제53조의2 및 제29조 제2항  
제1호

-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대상대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참고 : 전문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 [2017.8월 현재]

조항	전형명	대상자	총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보건계열*	간호	그외학과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이내	10%이내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한기준 없음	제한기준 없음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	제한기준 없음	제한기준 없음		
4호	특수교육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제한기준 없음	제한기준 없음		
8호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한기준 없음	10%이내	30%이내	제한기준 없음
12호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 수도권 모집금지 * 25세 입학, 산업체 근무 2년이상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제외)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5%이내	5%이내		제한기준 없음
14호	기회균형 선발  * 총 정원의 11%이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4%이내	10%이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5%이내 (농어촌 포함한 최대 5.5%이내)	20%이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자 중 3년이상 재직자	11%이내 (농어촌 및 기초생활을 포함한 최대 11%이내)	보건의료계열 모집금지 (유아교육과 포함)		제한기준 없음
1호	기타 정원 외 전형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13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20%이내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서해 5도 법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이내	5%이내		
제주 특별법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이내	10%이내		

\*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8개 보건관련 학과**”임.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 【전형요소의 구분】

## □ 전문대학의 전형요소는 크게 “교과형”과 “비교과형” 요소로 구분함.

- 세부 중심요소는,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을 중심으로 활용함.

☞ (교과형) : “학생부(교과)” 및 “수능”을 중심으로 평가

☞ (비교과형) : 학생의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전공 연계 실기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실기”, 기타 관심과 재능 등을 평가하는 “서류”\*\* 및 “학생부(비교과)” 등으로 교과영역과 차별되는 비교과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 면접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의 소질과 적성, 인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산업체의 채용방식과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

\*\* 서류 : 자기소개서, 수학 및 학업계획서, 추천서, 전공연계 자격, 기타 개인의 업적.특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중심으로 동기와 관심, 재능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위한 서류를 의미 (수학.과학.영어.논술 경시대회 수상 등 각종 교과위주의 스펙 관련 서류와 구별됨.)

## 가.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 작성 기준일

- 수시모집 지원자 : 2019. 8. 31(토) (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지원자 : 2019. 11. 30(토) (교과, 비교과)
  - 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데이터 제공

- 제공시기 (예정)
    - 수시모집 : 추후 확인
    - 정시모집 : 추후 확인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 2015. 2월 졸업자 ~ 2020. 2월 졸업(예정)자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 제공대상, 자료 제공일 등은 정부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평가를 위한 반영비율 및 반영여부 등은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
- ※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또는 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자 등은 비교과형 요소를 활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활용
- 학생부 교과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사항(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
- 검정고시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 □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및 성적 통지일

- 시험일 : 추후 확인
- 성적통지일 : 추후 확인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데이터 제공

- 제공기간 : 추후 확인 ~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마감일
- 제공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자료
  - 한국사, 영어 :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표기
  -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과목)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

####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원점수)	한국사	50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 15	14 ~ 10	9 ~ 5	4 ~ 0
	영어	100 ~ 90	89 ~ 80	79 ~ 70	69 ~ 60	59 ~ 50	49 ~ 40	39 ~ 30	29 ~ 20	19 ~ 0

####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과목)의 등급별 기준 비율】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교과형 전형요소로 활용
-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를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급으로만 반영 원칙

##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
- 대학은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 활용

-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 시 “한국사” 과목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사의 필수과목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사 적극 활용 및 반영 권장
- “한국사” 과목을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학과 특성 및 전형취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도입 관련

-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방안이 발표된 이후 별도 안내
- 2018학년도 대입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절대평가는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방안 적극 모색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세부 행정사항(성적 통지일, 성적 제공 일시, 성적자료 제공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에 따름

---

## 다. 기타 비교과형 요소 등

-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형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음.
  - 학생부 기록사항(비교과 활동 등)을 잘 활용·선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생활중심의 학생 선발 강화 적극 노력

-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비교과형 요소를 적극 활용하되, 전공특성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의 전형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요소 및 고사\*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음.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3.11제정, ‘14.9.12시행) 제10조에 의거,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슬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아니함.

### 3 전형방법 [평가방법]

#### ▣ 기본원칙

- 모집단위별 평가원칙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의 전형방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되,
- 국가 입시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입시부담을 완화하며,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적극 권장함.

#### 가.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방법 활성화

- 학생선발을 위해 대부분 활용되던 수능·내신 중심의 교과전형에서 학생의 의지와 가능성, 인성 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비교과형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방법 활성화
  - 종전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적성·인성 등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요소를 중시하여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방법 적극 활용
- 전문대학 교육내용이 산업체에서 구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입학단계에서부터 이와 연계하여 산업체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형” 활성화
  - 입시단계에서 산업체 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적성을 중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취업과 연계시켜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 활성화

#### \* 전문대학 비교과 입학전형

- 학생 선발 평가에 산업체 인사 참여
- 비교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취업의지, 재능과 열정, 소질과 적성 등을 심층 평가

## **나. 전형방법의 연구·개발**

- 각 대학은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직업교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과 기준을 개발하며, 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선도적 입학전형 개발에 중점 노력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확대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요소별 평가방법은 계량화 전략을 추구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개발

## **다. 전형방법 간소화**

- 전공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되, 학생·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쉽게 알고 입시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형요소의 활용은 2가지 이내로 간소화하며, 주된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여 시행
  - 교과위주 전형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활용 권장
  -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대학별로 설정·활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가급적 축소하여 운영 함.
    - 모집단위별 또는 전형별로 과도하게 전형방법을 달리 설정하여 전형방법 수가 확대되는 것을 지양함.
    -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
  - (전형유형 수 축소)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대학별로 설정·활용하는 전형유형 수를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 '수시 전형'은 4개 전형유형(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 '정시 전형'은 2개 전형유형(학생부, 수능)
  - (성적반영방법 간소화) 대입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복잡한 성적반영방법을 표준화 및 유형화 운영
    - '학생부 및 수능' 반영방법의 표준화 및 유형화 추진
- \* 세부계획은 향후 국정과제 및 교육부 기본방향 확정후 정책연구추진 예정

## 【전형방법 간소화 예시】



### 라. 수시 입학전형의 수능반영 지양 권고

- 수시모집 입학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 · 반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양
  - 전공 특성에 따라 학업성취수준 등 최저학력기준이 필요한 경우 수시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활용
  - 단, 필요에 따라 부득이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활용 원칙

☞ '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한 실시현황 분석 및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 및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각 대학에서도 수험생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

※ 향후 협의회가 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 경우 각 대학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 함.

### 마. 학생부 종합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교과를 비롯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다양한 비교과 전형자료(비교과기록상황,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기준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자기계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 4

# 모집·지원·합격 및 등록

## 가. 학생모집

### □ 모집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모집시기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며, 분할모집은 수시모집은 2회(차)로 하고, 정시모집은 분할 없이 한차례 실시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
- 모집기간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에는 그 기간을 준수 함.
- 수시모집에서 미 충원된 인원을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모집 가능

### □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감하여 결정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전학년도에 초과모집 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별 자체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 초과모집 인원은 차차학년도 감축모집
    -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초과선발 지양함.
    -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모집방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후 공개 모집함.

## 나. 전문대학 지원방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 지원방법

-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

※ 해당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각 대학 내 복수지원 허용여부를 모집요강에 안내 함)

###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무효 등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 인지하도록 조치함.
  - 원서접수 시 관련 사항 점검, 온라인 원서접수 시 수험생의 이전 지원현황,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 원서접수 처리 불가 등

## 다. 합격자 발표

- 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자를 발표함.
-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을 권장함.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수시모집 지원자 중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발표 시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후 합격자로 발표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
  - 충원합격 통보를 일방적으로 고지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발표할 시,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 상에 안내
-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 방법, 유의사항 등)은 모집요강에 안내할 것

## 라. 신입생 등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 (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등록이라 함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의 등록은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 ‘등록확인예치금’ 징수 가능

- 등록기간 전에 사전 예비 등록을 받는 것은 금지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

### □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 기간 내 등록 처리 하며,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

###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 □ 미등록 충원

- 모집시기별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전형기간 중 등록금 환불자 포함)
-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과실사고로 인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마.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

###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참고]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5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 등

### 가. 전형체제 표준

- 수험생 및 학부모가 전형내용을 쉽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표준화된 전형체제를 구축
- 대학은 표준화된 전형체제에 따라 항목 등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함.

#### 【전형체제 표준】

단계(구분)	A	B	C	D	E
단계별 항목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방법
세부내용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면접 위주 .....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사회·지역 배려자 관련 경력자 .....	학생부60%+면접40% 면접80%+학생부20% 실기70%+서류30% .....

####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

용어	정의
모집시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수시모집”, “정시모집”을 말함.
전형구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라 “일반전형”과 “정원내/외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
전형유형	▶ 주된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전형의 유형으로서 수능 위주, 학생부(교과/종합) 위주, 면접 위주, 실기 위주, 서류 위주, 비교과 전형을 말함. * 학생부 교과 위주는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이며, 학생부 종합 위주는 입학사정관 또는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하여 교과를 비롯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의 요소와 병행,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의미
전형명	▶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 한 것을 말함. * 정원내 특별전형 전형명(사용례) : “대학 자체기준 전형”, “일반과정 출업자 전형”, “전문(직업)과정 출업자 전형”, “주전자 전형”, “특기자 전형”, “관련경력자 전형”,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전형” 등
지원자격	▶ 각 전형별로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대학이 정한 세부기준을 말함.(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말함)
전형요소	▶ 학생선발 시 실제 반영하는 평가항목으로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등 5개 요소를 말함.
전형방법	▶ 학생선발 시 실제 적용되는 전형요소 활용 및 평가방법(요소별 반영비율과 적용방법)을 말함.
전형방법 수	▶ 학과별, 전형별로 적용하는 전형방법의 개수로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함. (예 : 학생부 70% + 수능 30% vs 학생부 80% + 수능 20%는 다른 전형방법)

## 나. 입학정보 표준화 및 용어정비 등

- 관심정보인 대학별 모집요강을 공통기준으로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열람내용과 순서를 재구성 하는 등 표준화 추진
- 불필요한 항목사용을 자제하여 복잡함을 줄이고, 어렵지 않고 흔히 사용하는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법률적 용어, 전문적 용어, 축약어 등 의 사용은 자제 하여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추진

각 대학은 위와 같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표준을 위하여 협의회가 관련 서식 및 예시 등을 포함한 “작성기준”을 통보한 경우, 각 대학은 모집요강 제작 및 활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III.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 가. 공통사항

##### □ 모집횟수

- 공통적인 모집횟수는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 정시모집의 경우 한차례만 실시

##### □ 접수기간

- 각 시기별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실시

##### □ 자율모집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 할 수 있음
  - 정시모집 접수 종료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2.29.](#)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가능 함.

##### □ 마감등록

- 입학전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2020.2.29](#)일에는 타 대학 미등록자에 한하여 합격 및 등록처리 함.

#### 나.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모집시기		접수기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발표	등록
수시	1차	'19.9.6(금) ~ 9.27(금)	'19.12.9(월) 까지	'19.12.11(수) ~ 12.13(금)	'19.12.14(토) ~ 12.23(월) 까지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2차	'19.11.6(수) ~ 11.20(수)				
정시		'19.12.30(월) ~ '20.01.13(월)	'20.02.4(화) 까지	'20.02.6(목) ~ 02.10(월)	'20.02.11(화) ~ 02.29(토) 24시까지	

※ [2020.2.29\(토\)](#)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2.29.(토)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 □ 시기별 전형기간

- 시기별 전형기간은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
  - 수시모집에서 면접·실기 등의 고사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충돌되지 않도록 고려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수시모집 기간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다음의 전형일정에 따라 실시함.
  - ▶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 2019. 7. 1일부터 12. 9일까지
  - ▶ 합격자 발표, 등록 : 상기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
- 정시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상기 전형일정을 준수함.  
 ※ 순수외국인의 모집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9월 입학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2020.2.29일자 합격 및 등록 시, 각 대학은 수험생의 타 대학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후 합격 및 등록 처리 함.(대입지원방법위반자 발생 시 발생할 분쟁을 대비해 수험생에 대한 전화 녹취 등 확보)
- 대학 간 원활하고 질서 있는 충원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시스템”(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http://apply.kcce.or.kr>] 등) 처리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을 위반(기본사항 미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 예정

## **IV. 행정사항**

### **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 2020학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제출기한 : [2018. 3월 말까지](#) (별도안내)

- 각 대학은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내 제출 함.

#### **□ 2020학년도 시행계획 공표(발표)**

- 발표기한 : [2018. 4월 말까지](#) 고등교육법 34조의5 제2항

-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함.

※ 시행계획에 대해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발표 함.

#### **□ 2020학년도 입학정보 제공**

- 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하여 언론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

#### **□ 2020학년도 모집시기별 주요사항 제출**

-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 : [2019. 5월 중순 경](#) (별도 안내)
- 정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 : [2019. 10월 중순 경](#) (별도 안내)

### **나. 지원·등록 현황 제출**

-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협의회로 제출 (별도 안내)
-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종료 후 협의회로 제출 (별도 안내)
-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자료를 협의회에 제출

## 다.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
  -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
  -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
  -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전문대학은 각별히 유의
  -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
-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지원자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인터넷포함) 등에 명기

### ■ 수시모집 합격여부 ■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20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다 /  없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 됨을 알고 있음.

지원자 확인 \_\_\_\_\_ (서명)

접수자 확인 \_\_\_\_\_ (서명)

※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이중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각 전문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라. 등록금 환불 관련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 마. 입학전형료

-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
- 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형료 수입·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준수하고,
- 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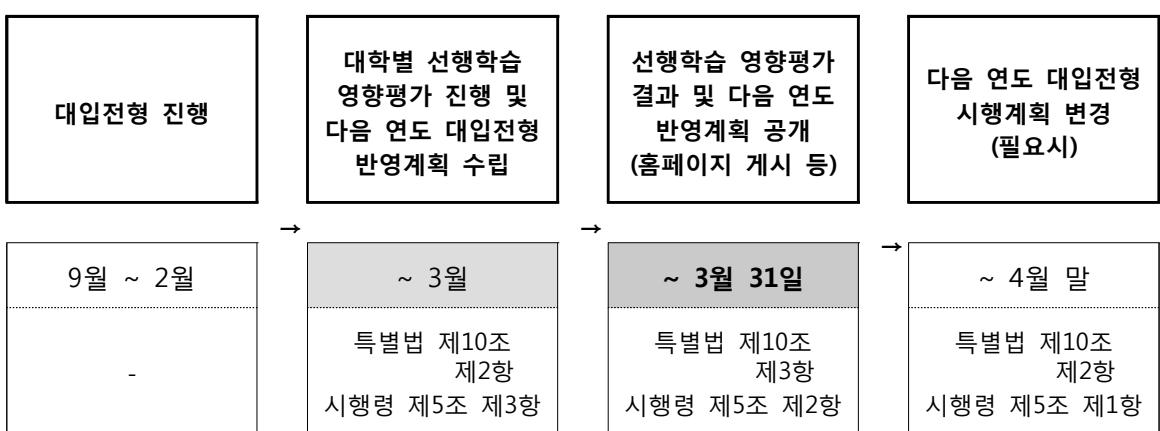
## 바. 사전 예고제 강화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을 앞당겨 공표하는 등 입학정보의 사전예고제 강화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사전 안내 기한을 준수 함.

구분	입학전형 기본사항 (협의회)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 학)
발표시기	고 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 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사항(범위 및 절차, 업무처리 간소화 방법 등)은 향후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협의회가 별도 안내

## 아. 기 타

- 입학전형 관련 서류(DB 서류 포함 등)는 최소 4년 보관
  - 단,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철저

### □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표준 개인 정보 보호 지침 제11조~12조 및 제60조 등

- 대입전형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5일 이내)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 절차 등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준용 함.
- 대학은 입시대가를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
-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 · 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 불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 (2017년 8월 기준)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지역	대학명
서울	동양미래대	경기	청강문화산업대	경북	서라벌대	전남	동아보건대
	명지전문대		한국관광대		선린대		목포과학대
	배화여자대		한국복지대		성덕대		순천제일대
	삼육보건대	부산	경남정보대		안동과학대		전남과학대
	서울여자간호대		대동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서일대		동부산대		포항대		청암대
	송의여자대		동의과학대		호산대		한영대
	인덕대		동주대		대덕대	전북	군산간호대
	한양여자대		부산경상대		대전과학기술대		군장대
인천	경인여자대		부산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백제예술대
	인천재능대		부산여자대		우송정보대		서해대
	인하공업전문대		부산예술대		한국영상대		원광보건대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울산	울산과학대	충남	백석문화대	제주	전북과학대
	경민대		춘해보건대		신성대		전주기전대
	경복대	경남	거제대		아주자동차대		전주비전대
	계원예술대		경남도립거창대		연암대		제주관광대
	국제대		경남도립남해대		충남도립대		제주한라대
	김포대		김해대		혜전대		
	농협대		동원과학기술대		강동대		
	대림대		마산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연암공과대		충북도립대		
	동서울대		진주보건대		충북보건과학대		
	동아방송예술대		창원문성대		충청대		
	동원대		한국승강기대		강릉영동대		
경기	두원공과대	대구	계명문화대	강원	강원관광대	* 파란색 대학은 국공립대학임.	
	부천대		대구공업대		강원도립대		
	서울예술대		대구과학대		상지영서대		
	서정대		대구보건대		세경대		
	수원과학대		수성대		송곡대		
	수원여자대		영남이공대		송호대		
	신구대		영진전문대		한국골프대		
경북	신안산대	경북	가톨릭상지대	광주	한림성심대	전남	
	안산대		경북과학대		광주보건대		
	여주대		경북도립대		기독간호대		
	연성대		경북보건대		동강대		
	오산대		경북전문대		서영대		
	용인송담대		구미대		조선간호대		
	옹지세무대		대경대		조선이공대		
	유한대		대구미래대		고구려대		
	장안대		문경대		광양보건대		

## 불임 2 2020학년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1차	2차
수시 모집	원서접수	○ 2019. 9. 6.(금) ~ 10.(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2019.7.1.(수) ~	2019.9.6.(금)~9.27(금) (22일)  2019.11.6.(수)~11.20(수) (15일)
	전형기간	○ 2019. 9. 11.(수) ~ 12. 9.(월)(90일)	2019.9.28.(토)부터 ~ 최초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19. 12. 10.(화)까지	2019.12.9.(월)까지
	합격자 등록	○ 2019. 12. 11.(수) ~ 13.(금)(3일)	2019.12.11.(수)~12.13(금) (3일)
	충원합격자 발표	○ 2019. 12. 19.(목)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2019.12.14.(토)~12.23(월) 까지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 2019. 12. 20.(금)	
정시 모집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중 3일 이상	2019.12.30.(월)~2020.1.13(월) (15일)
	전형기간	○ 가군 : 2020. 1. 2.(목) ~ 10.(금)(9일) ○ 나군 : 2020. 1. 11.(토) ~ 19.(일)(9일) ○ 다군 : 2020. 1. 20.(월) ~ 30.(목)(11일)	2020.1.14.(화)부터~최초 발표 전까지 자율
	합격자 발표	○ 2020. 2. 4.(화)까지	2020.2.4.(화) 까지
	합격자 등록	○ 2020. 2. 5.(수) ~ 7.(금)(3일)	2020.2.6.(목)~ 2.10(월) (5일)
	충원합격자 발표	○ 2020. 2. 17.(월)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2020.2.11.(화)~ 2.29(토) 까지  ※ 2020.2.29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충원합격자 등록	○ 2020. 2. 18.(화)	
추가 모집	원서접수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20. 2.20(목) ~ 27(목) 21시까지	※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이 발생할 시 입시 마감일인 2020.2.29.(토)까지 대학 이 자율적으로 운영
	전형일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 2020. 2. 28(금)	

## 불임 3 정원 외 특별전형 참고자료

### ■ 농어촌 특별전형 기준

#### □ 자격기준

#####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 ①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 I)과,
  - ②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 II)로 구분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 제출 서류 보완 및 검증 내실화

##### ○ 제출 서류 보완 및 의무화

- 지원자격 확인서,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검증 내실화

- 서류 검증을 내실화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 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 . 학생의 형제나 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 농어촌 지역 설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 농가인구비율, 인구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
-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 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지역에서 '시'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편 대상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 〈예시〉

-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기준

### □ 자격기준

####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4학년도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 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 지원자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등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 ※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대상 기준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기준

### □ 자격기준

####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운영기준 및 방법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 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혼합반 편성 및 운영 가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 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준

### □ 자격기준

####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재외국민
  - 나. 외국인
  - 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 법령상의 지원자격 구분(예)

모집 인원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해외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함
- 해외 학교 재학 기간, 자격 인정 기준 시점, 자격 기간 계산 기준, 지원 자격 인정 유효 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과정 연속 2~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4~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간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가 설정하고, 모집 요강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해외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
  - 대학 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미인정함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
  -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함
- 전교육과정이수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을 권장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 전형 일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 전형 방법

-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 기간 등 자격 요건과 전형 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함

## □ 모집 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결혼이주민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모집 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하여서는 안 됨(감사원 지적 사례)

## □ 지원자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재외국민 2% 이내 기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학생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모, 학생) 10.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취업자 제출) 11.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12.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13.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 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2021학년도부터 변경됨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 ■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기준

### □ 자격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